

대한민국 수의사는 한 팔을 묶고 진료를 해야 하는가

화명동물병원 천병훈

경북 수의과대학 졸업 후 어릴 적 꿈이며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임상 수의사의 길로 접어든지 3년, 그 짧은 기간 중 나는 무척 많은 일들을 겪었다. 때로는 보람을 느꼈고 때로는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어 힘든 2년여의 수련의 생활을 마치고 개원을 할 수 있었다. 개원 후 약품은 인의병원과 거래하는 약품도매상에서 구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신청한 약품목록 중 Diazepam, Phenobarbital, Dextromethorphan, Phentazocine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공급해줄 수가 없다는 연락이 와서 나는 그 관계자에게 [마약법 제 3조 10호]의 · 마약 취급 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하여 의료 또는 동물 진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한다.

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제 2조 ②의 8호]의

•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하여 의료 또는 동물 진료의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한다.

라는 법규를 보여주며 재차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하였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의 약품구매를 거절한 이 회사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대한수의사회에 질의하게 되었다. 내 질의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뿐만 아니라 인의용의 어떠한 약도 개원 수의사가 쓰는 것은 불법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그와 같은 회신은 놀라우면서도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대한수의사회의 회신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동물병원 개원의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란 말이 아닌가.

인의용 약도 회사에 따라 역가와 가격의 차가 천차만별인데 과연 우리 임상수의사들이 동물전용약 몇 가지로 그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동물용으로 나오지 않는 약들은 어떠하란 말인가? 동물용으로 나오지 않는 약들은 제약회사에 연락해서 원료를 직접 사서 조제하여 사용해야 한단 말인가?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고사하고 수액 하나라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 현실은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물론 법에는 사용해도 좋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동물 전용 약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함). 이 일로 나는 많은 선배 수의사들에게 연락을 하고 조언을 구했다. 모두들 이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바쁜 병원 업무와, 불법이든 합법이든 원하는 약품을 구해



생명을 실험동물같이 생각하고 진료에 임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오늘 나의 무지를 덜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나를 찾아온 생명들을 나의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먼저 바라보지 않았는가?

나는 질병 또는 치료과정에서 겪게 될 동물의 고통을 항상 고려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경제적 목적에 좌우됨이 없이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검사하고 치료를 하는가?

동물과 수의사간의 의사소통 장애를 동물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가?

- 머무르지 않는 순간의 되자 -

”

대한수의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 무관심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선배 수의사 들을 탓할 생각은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 선배 수의사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배 수의사들에게 받은 만큼 나 역시 후배 수의사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후배 수의사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당당하게 일 할 수 있어야겠기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나 역시도 앞서 밝힌 그 약들을 다른 제약회사에서 구해 쓸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아무 불편 없이 구해 쓸 수 있는 약이라 하더라도 선후배 내 동료 수의사들이 그것을 못 구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것은 말 못하는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생명을 다루는 수의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이 되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많은 임상 수의사들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을 위한 행정절차나 방법을 몰라 그 약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친구 의사나 약사

에게 부탁해서 소량씩 구해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명색 이 동물병원 원장들이 말이다. 그래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구입 요령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하려 한다.

개원 수의사나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쓰려고 할 때는 구청이나 보건소, 혹은 시청 위생과에 자신이 직접 신고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약품 도매상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 장과 필요한 약품목록을 보내면 약품 도매상에서 대행하여 어느 어느 동물 병원이나 사람병원에 무슨 무슨 약을 얼마만큼 공급했다라고 시청위생과에 자기들이 직접 가서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개원의들이 특별히 할 일은 없다.

그러나 법률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동물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우리 나라에서 상품화 되어있지 않다. 그러면서 도 인의용 약을 동물병원에서 써

도 좋다는 항목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밝혔듯이 약품도매상에서는 동물병원에 약품공급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인의용 약품의 사용목적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사용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시키는 것뿐이다. 이는 개인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모든 수의사들 이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문득 이름 모를 한 동료 수의사의 글이 생각난다.

”

난 과연 수의 중 중 어는 부분을 살피하고 싶는가.

”

나 역시 그리 하려고 노력하지만 한쪽 팔을 묶인 채로 진료를 하는 내가 과연 이 글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이 글을 읽는 많은 선후배 수의사들이 힘을 모아 모순된 법규를 고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